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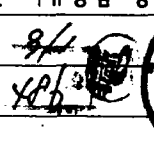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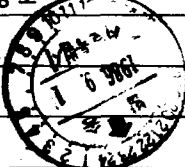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| | | | |
|--|--|---|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양정 27330-54 | (전화번호 735-6292) | 전결 규정 4 조 1 항 국장 전결사항 |
| 처리기간 | 시 장 | | |
| 시행일자 | 86. 8. | | |
| 보존연한 | 영구 | | |
| 보조 기 판 | 산업경제국장 전결 |  | 도시계획국장 |
| | 양정과장 | | 법무담당관 심사필 |
| | 양정계장 | | 업종통제관 행정과장 |
| 기안책임자 | 정현국 | 86. 8. (이후성) | 조 |
| 경유 수신 참조 | 각 안 참 조 | 발 신 |   |
| 제목 | 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에따른 서류공람 공고 | | |
| 제 1 안 |   | | |
| 수신 : 내부결재 | | | |
| 제목 : 동 건 |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건설부 고시 제1호 (84.1.4)로 도시계획 시설 (양국도매시장)</p> <p>결정 및 지적 승인된 시내 강남구 양재동 개포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B5-2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공고 시행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본공고에 소요되는 일간신문 공고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공고내용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나. 공고방법 : 관보 및 1개 일간신문에 1회게재</p> | | | |
| 첨부 | 일건서류 1부. | | |

1205-25(2-1)A(갑)
1981. 12. 18승인

정직 질서 창조

190mm×268mm (인세용지 2급 60g/㎡)
가 40-41 1985. 10. 7. 14

제 2 안

공 고 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6017 22

15

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공고

1. 건설부 고시제1호 (84.1.4)로 도시계획 시설 (양국도매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양재동 개포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B5-2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서류의 공람을 14일간 실시 합니다.,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양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6. 9. .

서울특별시

| 사업의명칭 | 위 치 | 사 업 내 용 | 시행자 | 공람기간 | 공람장소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도시계획 | 강남구양재동 | 대지:30,027.7M ² | 농협협동 | 86.9.~ | 서울특별시 |
| 사업(양국도매시장) | 개포토지구획 | 건물:17,021.77M ² | 조합중앙회 | 86.9.16 | 양정과 |
| | 정리사업지구 | (지하1층, 지상2층) | 회장 윤근환 | (14일간) | |
| | B5-2 | | | | |

제 3 안

수신: 총무처장관

제목: 관보 게재의뢰

1. 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에 따른 서류공람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하였기 관보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5

결사

| | |
|---|-------------|
| 첨부: 공고문 사본 2 부. | 1986 산업경 |
| 제 4 안 | |
| 수신: 공보관 | 발신: 산업경제국장 |
| 제목: 일간신문 공고의뢰 | |
| 1. 도시계획 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27조의 2에 의거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코자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가. 게재구분 : 공고 | |
| 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 공람 공고 | |
| 다. 게재방법 : 일간신문 공고 | |
| 라. 공고회수 : 1개 신문 1회 | |
| 마. 공고비 납부방법 : 사업시행자 부담 | |
| 첨부 공고문 사본 4부. | |
| 제 5 안 | |
| 수신: 강남구청장 | |
| 제목: 공고의뢰 | |
| 귀구관내 양재동 개포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B5-2에 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 시행에 따른 서류공람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니 귀구 (동) 게시판에 게시와 동시 동사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. | |
| 첨부 공고문 사본 1부. | |
| 제 6 안 | |

서울특별시 공고 제 446 호

도시계획사업 (양국도매시장)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1호(84.1.4)로 도시계획시설 (양국도매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양재동 개포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B5-2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서류의 공람을 14일간 실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양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6. 9 .

서울특별시장

| 사업의명칭 | 위 치 | 사업내용 | 시행자 | 공람기간 | 공람장소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도시계획 사업(양국 도매시장) | 강남구양재동 개포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B5-2 | 대지:30,027.7M ² 건물:17,021.77M ² (지하1층,지상2층) |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회장 : 윤근환 | 86.9.2 86.9.16 (14일간) | 서울특별시 양정과 |

농 헌 종 양 회

735 - 7481 (교) 2643

총 건 143.1 - 22

서울특별시청 귀하
장로: 산업경제국장

1986. 8. 25

제 목 : 도시계획사업(양국도매시장) 시행허가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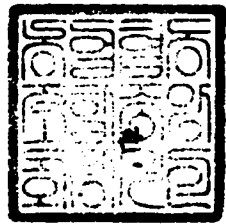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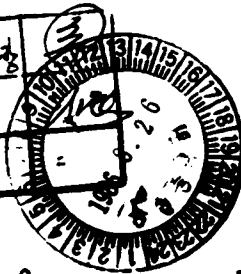
1.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에 외거 양국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2.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위하여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요령에 외거 동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으로 사료되나 본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본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조사업무를 병행추진하고 있는 중이오니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건축허가시에 심의받는 조건으로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붙 임 : 1. 사업 계획서 (사업 개요, 건설 및 운영 계획, 건설추진 계획) 1 부
 2. 계약 설계도서 (위치도, 평면도, 배치도 등) 1 부
 3. 건설 대지권 계서류 (대지사용승락서, 환지에정지 증명, 측량도) 1 부

끝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|
| 인 | 양전과장 | 양정계장 | 3 |
| 접수일자 | 1986. 8. 27 | 계 | |
| 처리과 | | (공판) | |



회 장 윤 권

안국도. 배시. 장. 권. 설. 공. 시.
시. 인. 개. 회. 시.



86. 8.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 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, 개포구 회정리지구 25-2

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 : 양곡도매시장)

다. 사업의 규모

0. 택지 면적 : 30,027.7 m^2 (9,083.34 평)

0. 건축연면적 : 17,021.8 m^2 (5,149 평)

라. 사업시행지의 주소 및 성명

서울특별시 중구 용정로 1 가 75

농업진흥조합중앙회 회장 은 근 관

마. 사업착수금 준공 예정일

0. 착수예정일 : '86. 10 월

0. 준공예정일 : '87. 10 월

바. 제원소서

0. 소요 예산 : 4,989 백만원

— 국고보조금 : 2,494.5 "

— 농업부담 : 2,494.5 "

0. 년차별 투자계획

단위 : 백만원

| 구 분 | '86 | '87 | 계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도축, 건축, 기계 | 600 | 4,389 | 4,989 |
| 전기공식 | | | |

사. 사용토지의 조사

| 지 번 | 지 목 | 지 면적 | 소 유 자 | 소유권 이외권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|
|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개포구회 정리지구85-2 | 채비지 | 30,027.7 ^평 | 서울시 | 없음 | 서울시도부미농업 아 사용승낙받아 건설후 서울시에 기부 제안. |

2. 건설및 운영계획

가. 사업목적

- 0. 공공부자에 의한 근대적 시장형성으로 대량물량의 신속 공적거래 촉진
- 0. 시장기능을 통한 양곡수급조절및 가격안정도모
- 0. 전국양곡거래의 표준이 될 기준가격형성
- 0. 민간부분 양곡 유통기능 활성화로 정부의 책임범위 축소

나. 추진경위

- 0. '78. 12. : 양곡시장 대지매입 예산 10억을 서울시에 보조
--- 매입 면적 : 14,470 평
- 0. '79. 8. : 개량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 확정
--- 양곡도매시장 전용 면적 : 10,000 평
--- 양곡시장은 추후 건설
- 0. '84. 12. : '84 예산에 양곡시장 건설비 확보
--- 국고 25 억원
--- 농업부담 25 "

- 0. '85. 1월 11일 :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권자와 관련,
 마우보지에 양국도매시장 건설 검토(대포물장)
- 0. '85. 11. : 양국도매시장을 양계동에 건설기토 확정 (부지 면적 :
 9,152 평)
- 0. '86. 1. : '86 대형공사 건설 진행계획 확정 (건설부)
- 0. '86. 2. : 산개지침 확정 (농수산부)
- 0. '86. 3 - 7월 : 건설대지 내에 남부순환길도 통과 계획으로 관계
 기관 (서울시, 철도청)과 대지경계 및 면적 검증·확정
 (부지 면적 : 30,027.7㎡)
- 0. '86. 7. : 건설대지 사용승낙 받음

4. 운영 계획

1) 개론 설립 (농수산부)

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
 양국도매시장을 개설하되, 농협중앙회장은 양국도매시장을 건설하
 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농협은 부담액만큼 무상 사용

2) 기관별 업무 분장

가) 농수산부

○ 국고보조금의 교부

나) 서울특별시

○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

이. 부지정지작업 및 상하수도의 조기 착공

이. 건설 후 도매시장의 운영계획 및 일반관리업무 등

다) 농업

이. 설계에서 준공 까지의 전 과정을 시공사의 감독 하에 건설추진

이. 국고보조사업임을 감안, 조기 건설 추진

3. 건설추진 계획

가. 건축공사

| 층 . 별 | 면적 | 용 . 기 . 도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지하 1 층 | 3,424 | 기계실, 전기실, 후생시설, 대매실, 주차장 등 |
| 지상 1 층 | 9,300 | 양곡상 판매장, 농업공판장, 창고 |
| 지상 2 층 | 1,878 | 양곡상 사무실 (83 계) |
| 지상 3 층 | 2,250 | 농업공판장 사무실, 은행지점, 강당, 식당, 양곡협회 및 시장관리 사무실 |
| 부 . 대 . 실 | 169.77 | 화장실, 수위실 |
| 계 | 17,021.77 | |

(단위 : m²)

나. 배치 및 차량동선 계획

이. 인접한 15층 도도복 중심으로 진입시 우측에 농업공판장, 좌측에 양곡도매시장 (160만 정도 입주)을 실시하고 2층으로 상호 연결 배치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적 기함.

이. 인접한 우측 건물과 시설물 양측 면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

양곡도매시장 운영에 적당

○ 11분 자택의 죽음이 완쾌하고 출입권의 동선과 고사되지 않도록

배치

양곡시장

내외보람 민포외 영광

서울특별시

농축27030- 1084

86. 7. 22

수신 농협중앙회 회장 온근환

제목 양곡도매시장 건설 부지 사용승락 변경

1. 서울시 농축27030-615 (86.4.22) 양곡도매시장 건설부지 사용승락 내용과
관련입니다

2. 당초 양곡시장 부지로 확정되었던 개포토지구획정리지구 B5-2, B5-3-2부락
의 체비지 면적중 남부순환 철도계획선 예정지 변경에 따라 B5-2부락의 환지예정지 면적
이 당초 26,115.1m² (7,899.8평)이 30,027.7m²(9,083.4평)으로 변경됨에 따라

3. 농수산부 장관으로 부터 B5-2, B5-3-2 부락중 변경된 면적의 B5-2부락 1필
지(30,027.7m²)만 양곡시장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통보에 의하여

4. 당초 귀회에 양곡시장 부지 사용승락 사항중 다음과 같이 조정 승락 변경 통보
하니 사업수행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

가. 당초 사용승락 내용

- 개포 토지구획정리지구 B5-2, B5-3-2부락의 체비지
면적 30,257.2m² (9,152평)

나. 변경사용 승락 내용

- 개포토지구획정리지구 B5-2, 부락의 체비지
면적 30,027.7m² (9,083.4평)



서울특별시



이 증명으로 대에 지당면설정 기타 물건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인을 요함



④ 창 구

환지에정지지정증명원

서울특별시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종 전 의 토 지 | | | 환 지 예 정 지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등 명 | 지 번 | 지 목 | 면 적 | 구 획 번 호 | 부 호 | 권 리 면 적 | 환 지 면 적 | 정 수 | 교 부 |
| 개포지구 | 85-2 | 채기지 | | Bt | L | X | 30272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도 시 계 획 사 랑

| | |
|---------|---|
| (용도) 지역 | 준거, 준거전용, 준주거, 상업, 준공업, 자연녹지, 방산녹지 |
| (용도) 지구 | 아파트, 고도(최소)주거, (1, 2, 3, 4, 5) 중이전, 업무 |
| 도시계획시설 | 도매시장 |

첨부서류 : 지적도 1매

1985 도시실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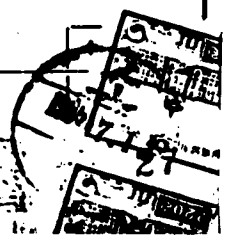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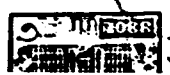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주소
 대여기주 도시계획인 직함

강남구청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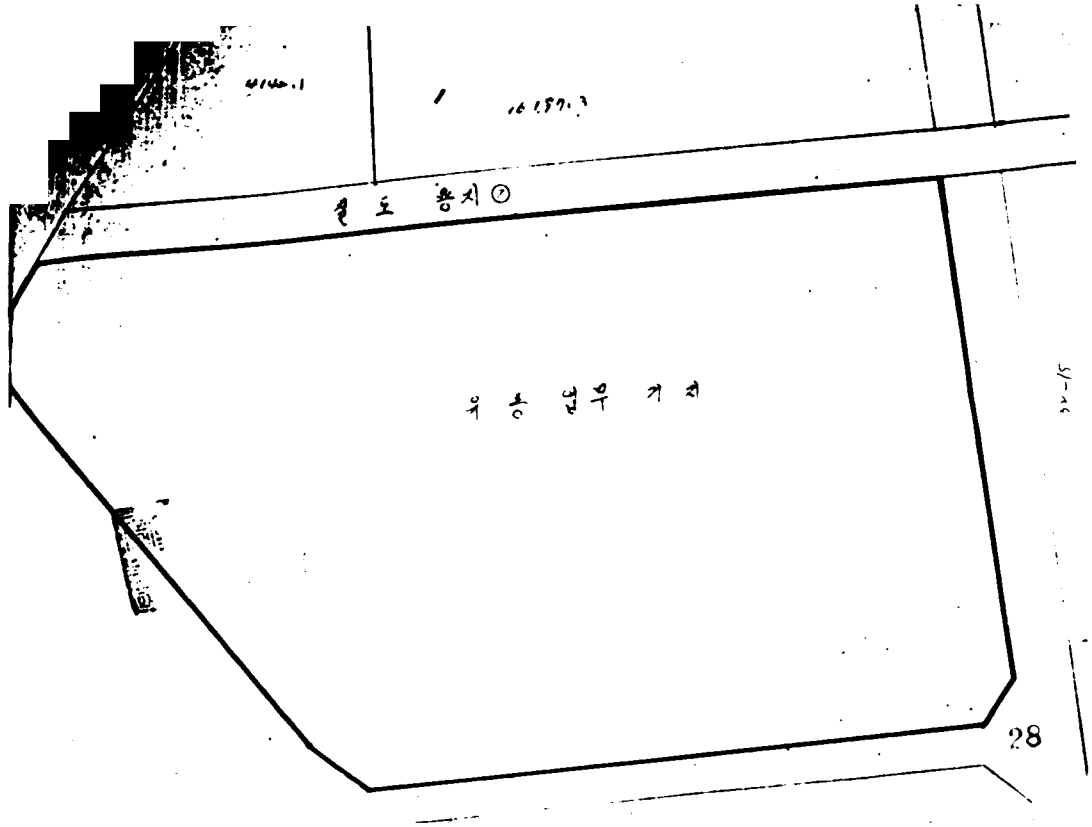
이하 적은 내용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.

198 . 1986. 7. 12

리 오 트 번 기 가 나 그 회 가



351 13003031.1
352 130030324



28

환지지시측량필증

제 15 호

1986 . 8 . 16 .

수 신 (주변순찰회)

개 목 환지지시측량필증교부

1. 1986. 4. 2. 자 귀하게서 신청하신 경기도 도지
군회장리 (35 구획내 양외) 동 38 번지의 2 (제비지)
의 원지 지시측량 필증을 발급해준다고 교부하며,
2. 원지 측량에 착수할 때 주의사항을 꼭 이행키
로 하여서 양해받음을 원할까 보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도 별 1 부. 끝.

장안군지리지작성특별지지사 관장



No.

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개포지구획정리지구
구획내 양재동 B5번지 2호환지 지시 측량도



○ 항목 표시는

측량자 지적기사

급

제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

공감

(2건은 병치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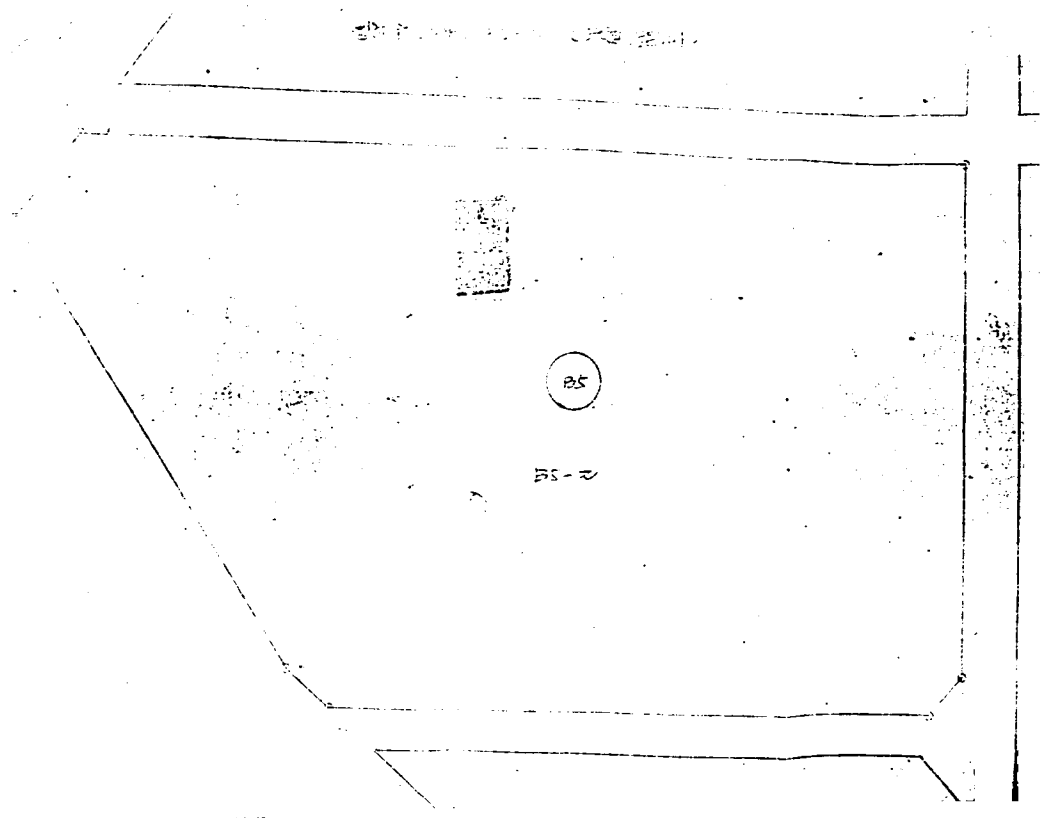
측량일자 시가一九八六年八月五日

측척 1:2000

구획상소

2630320-32402(56814) 86.12.31까지 공사하는
지역 이나 건축은 가능할 지역입니다.

1. 사용 목적
2. 건축 가능 지역 여부 판단 ()항에 해당함
가. 건축 가능 지역
나. 장래 지공 계획상 건축 가능 지역임
3.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치 않음



25-2